

평지부분이편입되어경사지만남은잔여지:잔여지수용

○(판단)이의신청인○○○의잔여지○○○○군○○읍○○리435-6대774㎡[전체2,290㎡,편입1,516㎡,편입비율66%,계획(보전)관리지역]는잔여면적은크지만,경사지부분만잔여지로남게되고,편입지경계선을따라옹벽이설치되어사실상진출입로가단절되는등종래의목적으로사용하기가현저히곤란하다고판단되므로금회재결에서수용하기로한다.